

#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76호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김정우의원 외 6명	발의년월일	2019.03.08.
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심경석

## I. 제안내용

### 1. 제안이유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우리구가 지원하는 국가보훈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안 제3조(지원대상) 제5호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신설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국가보훈 기본법」,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예산 반영 필요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II. 검토 의견

### 1. 조례 개정의 배경

-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예우 및 지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현행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예우 및 지원대상을 「국가유동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총 5가지 법률에서 인정하는 대상자 및 단체를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보훈대상자는 2,490명이며, 2019년도 보훈회원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지원금액은 총 32억 5천만원 중 보훈예우수당으로 22억 4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임.

<2019년 서초구 보훈회원 지원 현황>

지원내역	지원금액	대상인원	예산액 (천원)	재원
계	-	-	3,258,460	-
보훈예우수당	7만원/월	2,490명	2,242,800	구비
참전유공자 위문금	35만원/연1회	1,522명	595,000	구비
보훈단체 회원 위문금	5만원/연3회	1,920명	395,160	구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52명	15,000	구비
국가유공자 장례지원서비스	200인분	70명	10,500	구비

-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등의 보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02.1.26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2.3.27 시행)되었고, 2004.1.20일 법의 제명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음.

## 2. 주요 내용 검토

### 1) 지원대상(안 제3조제5호)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서초구에서 지원하는 대상자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를 포함하기 위한 것임.
- 먼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제2호에서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서 ‘희생·공헌자’는 자주독립, 국가수호 등 4가지 경우<sup>1)</sup>를 목적으로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송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5·18민주유공자’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다목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Ⅲ. 참고자료

#### 1. 관계법규

---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송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애등급(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15.5.14.> <개정 2017.4.2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목개정 2015.5.14.]